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00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박 정·박상혁·유동수

김영환 · 송옥주 · 정성호

정동영 • 김주영 • 김성원

김성회 · 황정아 · 소병훈

김용태 · 이양수 · 배준영

이기헌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응당한 보상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498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5.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7. 기금의 운용수익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농어업 · 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 · 개선
- 2. 전기 · 통신 · 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 개선

- 3.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관광자원의 개발
- 5.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
- 6. 교육 · 의료 · 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 7. 민방위 정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이 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 ④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3(기금의 회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27조의4(기금 계정의 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7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적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수 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27조의2(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 경지역 발전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 경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 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급 6.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가금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u>에 사용한다.</u>
- 1. 농어업 · 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 · 개선
- 2.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 3.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관광자원의 개발
- 5.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 충
- 6. 교육·의료·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 7. 민방위 정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이수행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
- ④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7조의3(기금의 회계기관) 행정

<신 설>

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 수관 · 기금재무관 ·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제27조의4(기금 계정의 설치) 행 <신 설> 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27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 <u><</u>신 설> 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 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적 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 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 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 에서 보전할 수 있다.